

아름다운 여수, 행복한 시민



제 112 호
2017년6월14일(수)

여 수 시 보

시 정 방 침

- 1. 함께하는 소통시정
- 1. 활력있는 지역경제
- 1. 수준높은 교육복지
- 1. 앞서가는 해양관광
- 1. 걱정없는 안전사회

■ 발행인 : 여수시장 ■ 발행소 : 공보담당관실 / 여수시 시청로 1(학동) ☎ 659-3023 FAX) 659-5803

목 차

【공 고】

○ 여수시 공고 제2017-1190호 무단방치이륜차 강제(폐차)처리 공고 /3

회 판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무단방치이륜차 강제폐차 공고

우리시 관내 무단 방치된 이륜차의 소유자를 알 수 없어 『자동차관리법』 제2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(폐차)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, 이륜차 소유자는 공고기간 내에 차량을 회수·말소 등 자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.

2017년 6월 14일

여 수 시 장

1. 공고기간 : 2017년 6월14일 ~ 2017년 6월 29(15일간)
 2. 강제처리(폐차) 일시 : 2017년 7월 1일 이후
 3. 강제처리(폐차) 장소 : 관내 폐차장
 4. 강제처리(폐차) 대상 : 이륜차 3대 **【붙임 내역참조】**
 5. 소유자(점유자) 유의사항
 - 본 공고 기간 내 자진 처리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처리(매각·폐차) 됨을 알려 드리며 소유자가 확인 될 경우에는 『자동차관리법』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(20~100만원)납부 통고처분 대상이 되며,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(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)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 - 강제처리(폐차) 시 차량 내 모든 물품(비품)도 함께 처분되며, 이에 대한 책임은 소유자(점유자)에게 있습니다.
 6. 문 의 처 : 여수시 교통과 061-659-4144
- ※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한 공시송달은 이 공고로 갈음 함.

강제(폐차)처리 대상 무단방치 이륜차

관리번호	2017 - 30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차량번호 : 미상 ○ 소 유 자 : 미상 ○ 방치내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견인예정일 : '17. 7. 1이후 - 방치장소 : 여수시 신기동 주공4단지 입구 		
관리번호	2017 - 32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차량번호 : 미상 ○ 소 유 자 : 미상 ○ 방치내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견인예정일 : '17. 7. 1이후 - 방치장소 : 여수시 문수7길 18앞 도로변 		

(80*80)

강제(폐차)처리 대상 무단방치 이륜차

관리번호	2017 - 33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차량번호 : 미상 ○ 소 유 자 : 미상 ○ 방치내역 - 견인예정일 : '17. 7. 1이후 - 방치장소 : 여수시 문수7길 18앞 도로변 		